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2009. 7.14.	2009. 7.14.	2009. 7.21.	2009. 7.21.	김종하 의원	

2. 제안설명요지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충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귀농인 지원위원회 운영
(안 제3조부터 안 제7까지)

나. 귀농 정착자금 지원 등 영농기반 지원(안 제8조)

다. 귀농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라.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시생활을 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충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우리 시의 귀농인은 총 76명(1990년~2008년말) 으로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나 최근 5년간의 귀농인이 35명으로 46%를 차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수산식품부에서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귀농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최근 우리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의 감소된 노동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귀농인은 이러한 농촌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고자 2007년 5월 전남 강진군을 시작으로 20여 곳에서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귀농인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충주시 농업발전과 인구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조례에서 귀농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귀

농인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칙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전북 완주군의 경우와 같이 차량번호판 교체비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원 등 예산의 규모를 떠나 작은 부분까지 귀농인을 배려하는 정책과 지원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1) 질의 : 귀농인의 연령 제한이 있나? 60세 이상은?
답변 :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도시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60세 이상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2) 질의 :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답변 : 60세 정도까지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3) 질의 : 농지의 취득이 없는 임차농의 경우도 귀농인에 해당되는지?
답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됨

(4) 질의 : 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위원회" 에서 대행이 불가능한가?
답변 :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구성

6. 심사결과 : 원안가결